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3. 8.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5건	5							
1	● ● ●	@@@ ♠♠♠♠ 보강공사 (가설교량) 추진 부적정	1							
2	● ● ●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1							
3	● ●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1							
4	◇ ◇ ◇	★★★ ♡♡♡ 확충사업 ○○○ 공공측량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1							
5	▽▽▽▽	▽▽▽▽ 뉴딜사업 ▼▼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 @ @ ♠ ♠ ♠ ♠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
2.	& & & ※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8
3.	☆ ☆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2
4.	★ ★ ★ ♡ ♡ ♡ 확충사업 ○ ○ ○ 공공측량용역 분할발주 부적정(시정)	17
5.	▽ ▽ ▽ ▽ 뉴딜사업 ▼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20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보강공사(가설교량)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 @ @ ♠♠♠♠ 보강공사(가설교량)」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1] 사업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 ♠♠♠♠ 보강공사(가설교량)	우회도로설치 L=240m (가설교량 L=57m)	1,015	975	40	2022. 5.16.	2022.5.17~ 2023.5.16. (공사중지중)	* * * * * (주)C C C	공정률 70%

1. 특정공법(가설교량) 선정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일반 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2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021. 4. 1. 입찰공고부터 시행)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특정공법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표 2] 특정공법 선정절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2. 외부전문가 자문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4. 제안요청서의 교부 5. 제안서의 제출 6. 제안서의 평가 7. 공법선정 평가 방법(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8. 공법 제안서 선정 9. 공법선정자 통지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
|--|

따라서 ○○○○ ●●●●에서는 특정공법 가설(假設)교량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 가설교량(다른 형식이나 다른 특허 공법으로 가설교량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표2]와 같이 특정공법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E등급 판정(2022. 1. 15.)¹⁾으로 @@@(구교) 개체 공사를 긴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결정²⁾하

1) 가. 상부구조물의 철근량 부족, 교각 균열 등의 중대결함, 공용내하력의 심각한 저하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보강공사의 과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과업내용과 다르게 @@@(구교) 개체 공사를 위한 가설(假設) 교량 설치공사로 용역을 추진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설(假設) 교량을 포함한 우회도로를 신속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1-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 @ ♠♠♠♠ 보강공사(가설교량)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징 계 대 상 자 ■■■■

지방○○○○○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전 ●●●●)

징 계 종 류 ㉸㉸계

내 용

위 지방○○○○○ ■■■■은 ●●●●에서 2020. 7. 7.부터 2022. 7. 7.까지 ㉸㉸
㉸㉸ ㉸㉸으로 재직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2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021. 4. 1. 입찰공고부터 시행)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특정공법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표 2] 특정공법 선정절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2. 외부전문가 자문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4. 제안요청서의 교부 5. 제안서의 제출 6. 제안서의 평가 7. 공법선정 평가 방법(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8. 공법 제안서 선정 9. 공법선정자 통지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
|--|

따라서 ○○○○ ●●●●에서는 특정공법 가설(假設)교량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 가설교량(♣♣♣♣)외에 다른 형식이나 다른 특허 공법으로 가설교량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표2]와 같이 특정공법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 ㄷㄷㄷㄷ ㄷㄷ으로 재직한 ●●●● ㄹㄹㄹㄹ은 @@@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E등급 판정(2022. 1. 15.)⁴⁾으로 @@@(구교) 개체 공사를 긴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결정⁵⁾하여 2022. 3. 24. “@@@ ♠♠♠♠ 보강공사(가설교량)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서”를 통해 5개 가설교량 특정 공법 중에서 공법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 가설교량(♣♣♣♣) 공법

4) 가. 상부구조물의 철근량 부족, 교각 균열 등의 중대결함, 공용내하력의 심각한 저하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가. @@@ 통행제한공고(제2022-458호, 2022.2.21.) : 총중량 21.8톤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
 나. @@@(구교) 개체 추진(2022.2.11.)에 따른 특정공법으로 가설(假設)교량 설치

을 선정하여 최초 000,000천 원을 설계에 반영을 결정하였고, 지하매설물 간섭에 따른 구조 및 수량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하여 00,000천 원을 반영을 결정하는 등 총 000,000천 원을 설계에 반영을 결정하는 등 특정공법 선정절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 가설교량(♣♣♣♣) 신기술(특허)공법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장은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⁶⁾ 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 미검토 및 그 결과 미통보,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⁷⁾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7)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m²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공사 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 ●●●에서는 “&& ※※※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절곡이 불필요한 장철근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 과다 설계 되었음에도 실정 보고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또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8.)」을 적용하여 동상방지층 필요 여부를 산정⁸⁾한 결과 동상방지층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과다 설계 등으로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안전 및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8) 설계동결 깊이(포장 단면에 동결 현상이 발생하는 깊이)를 산정한 결과 16.5cm로써 포장 두께는 25cm로 동결이 발생하는 깊이보다 깊어 동상방지층 불필요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 시동 일원 ☆☆☆ 노후 및 폭 협소에 따라 개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략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공사(용역)현황

공사명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 개체공사	○○○○ 시동	교량개체 L=78m, B=12m	2,806	2022.03.02.	2022.03.08. ~ 2023.08.29.	(주)CCCCCC ○○○	80%
☆☆☆ 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시동	실시설계용역 1식	130	2021.02.22.	2021.02.23. ~ 2021.12.22.	(주)☆☆☆☆☆	100% (완료)

1. 안전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제1항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10)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높이10미터이상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본 공사는 향타 및 향발기 사용)
 10)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본 공사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해당)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¹¹⁾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 ●●●에서는 [표 2]와 같이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¹²⁾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업무 수행 현황

지정절차		지정절차 업무 수행 현황		지적사항
세부내용	행위흐름	일 자	업무 수행 현황	
1.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등 실시를 위해 발주자에게 지정요청	시공사→발주자	'22.03.2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2.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	발주자	기 공고기간 '21.03.10. ~ '21.03.2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기 공고사항으로 같음(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21.3.30.~'22.03.30.)(1년간 유효) ¹³⁾	-
3.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발주자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발주자	'21.03.26.	(주)○○ 외 3개사 접수	-
4.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관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발주자	'21.03.30.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등록부 공고	-
5.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 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 제출	시공사→발주자	-	-	절차 누락
6. 발주자는 5번항 이후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공고 ¹⁴⁾	발주자	-	-	절차 누락
7.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6번항의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발주자	-	-	절차 누락
8. 발주자는 7번항의 서류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후 통보	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22.03.2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차 누락

※ ○○○ 제출자료 참고 작성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2) (주)○○(○○○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1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함
 14)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착공예정일,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적정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서를 제출했을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사인 (주)☆☆☆☆로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제시한 공사기간(18개월)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기간과 산출근거를 현장설명(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 공사기간¹⁵⁾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15) 산정결과 513일(17개월) 준비기간 36일, 비작업일수 177일, 작업일수 232일, 정리기간 68일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 ●●●●에서는 교량 상부공(슬래브) 시공을 위해 동바리를 [표 3] 및 [사진 1(왼쪽)]과 같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설치하였고 본 교량은 장대교량 및 특수 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교량¹⁶⁾인데 교명주 4개소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설계내역에 가설사무소 000㎡를 축조하도록 계상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컨테이너 3개동만(00㎡) 설치되어 있어 감사일 현재 까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을 감액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교량 동바리 설치 관련 당초계획 및 현장 현황

구 분	비계종류	설치 수량 (공/㎡)	동바리 설치 높이 현황(m)				비 고
			교대1	교대2	교각1	교각2	
당초설계	시스템비계	872	4.8	4.8	4.8	4.8	
현장설치현황	강관비계	377	2.0	2.0	1.8	1.8	

1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4.03 구조물공 수량산출요령

또한 감사일 현재 장마기간으로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예상됨에도 [사진 1(오른쪽)]과 같이 현장 인근 하천부지 내 폐기물 및 공사자재를 방치하는 등 수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 1] 공사 현장사진

교량 교각 동바리 설치 현황	하천부지 내 폐기물, 자재 방치

조치할 사항 ○○○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안전관리 업무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하천부지 내 방치된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확충사업 ○○○ 용역 분할 발주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¹⁷⁾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¹⁸⁾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7)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함

18)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¹⁹⁾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에서는 「★★★ ♣♣♣ 확충사업 ○○○ 공공측량용역」에 대하여 2021. 11. 24. 0,000,000천 원(60개월)으로 원가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 ◇◇◇에서는 2021. 11. 29. 경상북도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높이겠다는 사유로 분할 발주²⁰⁾를 결정하였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기술용역으로 일상감사 대상이지만 ◎◎◎ □□□□□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 ◇◇◇에서는 0,000,000천 원의 용역비로 「★★★ ♣♣♣ 확충사업 ○○○ 공공측량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맡겨야 하며 단일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통합 발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확충사업 ○○○ 공공측량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 원가심사 결과 금액과 다르게 차수 분으로 분할 발주로 추진하였다.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20) 1차분(2021.12.06.) : 000,000천 원

2차분(2022.05.09.) : 00,000천 원

3차분(2023.04.06.) : 00,000천 원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고 분리 발주함에 따라 통합 발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00,000천 원²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미 발주된 잔여 과업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1) 0,000,000천 원에 대해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낙찰하한율 79.995%)과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낙찰하한율 87.745%)과 비교

일련번호	5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동 128번지 ▽▽▽▽ 뉴딜사업 ▼▼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담당하면서 2020. 1월부터 202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 처리하였고 안전관련 가새, 수직보호망 및 안전난간 설치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제1중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5,986.77㎡	▽▽▽▽▽ (20.1~23.10)	22.3.28	22.7.15 (22.10.26)	316	7,049	☒☒☒☒☒(주) (건축사사무소☐☐)	

1.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²²⁾, 수직보호망²³⁾ 또는 방호선반²⁴⁾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및 수직보호망 등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2023. 6. 26.~30.) 중 위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캡 설치, 가새 설치 기준 등 안전관련 시설 설치가 미흡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22)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23)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4)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작업자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안전난간 등 부적정 시공 현황

가새 설치 부적정	안전난간 등 설치 부적정
안전캡 미설치	수직보호망 훼손 및 작업발판 거푸집 적재 부적정

2.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지방서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 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상에 가설울타리가 기존에 설치된 사항으로 000m를 미시공 하였으나 2023. 6. 30. 감사일 현재 설계변경이나 감액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가설울타리 미설치 등으로 사업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²⁵⁾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 한 사실이 있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5)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과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동 128 ▽▽▽▽ 뉴딜사업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주)○○○○○○○○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3. 6. 30.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하였고, 공사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요인 및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²⁶⁾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뉴딜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한 5,987㎡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누락한 설계서를 아무런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2022. 6. 7.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사실이 있다.

26)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그 결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① 위 공사에서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액하고,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시 관계 법령 규정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